

의정부지방법원 2022. 9. 20 선고 2021나208414 판결 [이득상환금 청구의 소]

재판경과

의정부지방법원 2022. 9. 20 선고 2021나208414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4. 28 선고 2020가단89656 판결

전 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승 담당변호사 정인기

피고, 피항소인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이현성

변론종결 2022. 8. 16.

판결선고 2022. 9. 20.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4. 28. 선고 2020가단89656 판결

주 문

1. 항소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 C는 원고에게 1억 4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7.부터 2022. 9.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 취소. 연대하여 1억 4천만 원 및 이에 대한 2015. 2. 17. 이후 지연손해금.(원고는 어음법상 이득상환청구권으로 구하다가 항소심에서 정산금을 구하는 것으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 유

원고는 발행인 피고들, 액면금 1억 4천만 원인 2015. 2. 13.자 약속어음(발행일 2012. 12. 15., 지급기일 2015. 2. 16.) 공정증서 정본(갑1)을 소지하고 있다.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2012. 12. 15. 피고 C와 원고의 대여금 채권을 합계 1억 4천만 원(2011. 9. 7. 기준 정산 대여금 9000만 원 + 2012. 11. 30. 대여금 5천만 원)으로 정산 합의하고, 2015. 2. 13. 피고 C와 다시 같은 내용으로 정산 합의한 다음 그 정산금 지급을 위하여 갑1(공정증서)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C는 원고에게 정산금 1억 4천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위와 같은 대여 및 정산 합의는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이루어진 것일 뿐, 원고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자료들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직접 또는 적법한 대리인을 통하여 대여 또는 정산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나아가 다른 사람이 부담하는 원인채무와 관련하여 약속어음상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은 그 어음상의 채무만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히 채권자에 대하여 자기가 그 약속어음 발행의 원인이 된 채무까지 부담하겠다는 뜻으로 어음상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한하여 그 원인채무에 대한 채무까지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다33176 판결 등 참조). 피고 B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고, 피고 C가 피고 B를 대리하여 원고에게 갑1(공정증서)을 작성해 준 사실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 B가 원고에 대하여 약속어음상 채무를 넘어서서 그 발행의 원인이 된 피고 C의 정산금 지급채무까지 함께 부담하겠다는 뜻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정산금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항소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 C에게는 정산금 및 그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박이규, 판사 황현찬, 판사 오성우